##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기만성

천 정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 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 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 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 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 (《**김일성**전집》제65권 406폐지)

오늘 부르죠아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주의민사재판제도에 대한 환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으로 《자유, 평등》으로 표방되고있는 부르죠아《자유심증주의》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의 《자유 심증주의》는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 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 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르죠아지들이 떠드는《자유심증주의》는 재판에서 사건의 사실사정에 대한 진실성인정여부는 철저히 판사의 내부적확신에 기초해야 한다는 소송리론으로서 자본주의재판제도가 확립된 이래 오늘까지 자본주의재판에서 적용되고있다.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재판이 마치도 그무슨 《정의》와 《량심》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한다는것이 강조되고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재판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려는 한갖 허구에 불과한것이다.

이로부터 부르죠아지들이 떠드는 《자유 심증주의》의 기만성을 해부학적으로 폭로 비판하는것은 사람들에게 부르죠아재판의 반동적정체를 똑바로 알고 그와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 의를 가진다.

《자유심증주의》리론을 처음으로 들고나 온것은 프랑스의 부르죠아법률학자 두뽀 르였다.

그는 1790년 12월 26일 프랑스헌법제 정회의에 재판개혁과 관련한 보고초안을 제 출하였다. 보고서에서 그는 《자유심증주 의》리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당시 재판 에서 적용되고있는 증거의 수집과 평가방 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자기의 주장에서 봉건사회의 재판 에서와 같이 증거의 가치를 미리 법적으 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 들에 대하여 판사가 변함없는것으로 간주 해야 하는것은 사건에 대한 옳은 평가를 내 릴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수집과 평가에서 판사 에게 자그마한 재량의 여지도 주지 않고 다 만 이러저러한 사실을 승인 또는 거부할 의 무만을 지우는 《증거법정주의》는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표상을 가질수 없게 하고 나 아가서 사람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응당 폐지되여야 하며 오직 판 사의 《내부적확신》에 기초하고있는 《자유 심증주의》만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게 하므로 재판에서 《법앞에서의 만인의 평등》,《인간의 인격에 대한 존증》의 요구 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뽀르의 이러한 주장은 물론 당시의 조건으로 볼 때 혁신적인것으로 간주되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재판에서 근로인민대 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것은 결코 아니였다. 그는 자기의 주장에서 재판에서 판사는 《초계급적》인 립장에 선 《내부적확신》에 기초하여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심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기만이고 허위이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해당 사회에서 지배 계급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권력적인 활 동인것만큼 사건을 해결하는 판사는 응당 지배계급의 의사를 따르게 되는것이다. 다 시말하여 재판에서의 판사의 모든 활동은 철저히 지배계급의 리익실현에만 지향되 게 된다. 지배계급의 리익실현을 떠난 그 어 떠한 재판활동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두뽀르의 주장은 부르죠아지들의 대변 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초계급성》이 라는 말로써 근로인민대중의 환심을 얻어 그들의 투쟁의 대가로 부르죠아지들의 리 익실현에 저애로 되는 재판제도를 타파하 고 부르죠아적인 재판제도를 확립하기 위 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두뽀르가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는 부르죠아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게 되였으며 그것은 프랑스에서의 부르죠아혁명이후 재판진행의 기본방식으로 인정되였고 1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전유럽에 파급되였다.

이처럼 《자유심증주의》는 발생시초부터 부르죠아지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 익실현에 이바지하는 부르죠아적인 재판 제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여 나왔다.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기만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민사재 판제도의 계급적본질을 은폐하고 근로인 민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 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부르죠아지들이 떠드는 《자유심증주의》에서는 자본주의재판제도의 계급적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판에서의 판사의 자유 로운 심증을 초계급적인 심증으로 묘사하 고있다. 즉 재판진행에 대한 판사의 심증 은 그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배제하고 계 급적리해관계도 초월한 《제3자의 립장》에 서 가지게 되는 심증이라는것이다.

이것을 리론적으로 안받침하여주는것이 오늘 부르죠아반동들이 제창하는 《3권분 립》론이다.

부르죠아헌법에서는 《3권분립》에 기초 하여 사법권이 재판소에 있다고 규정하고 사법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이와 같은 허구적인《헌법》규정들을 인용하면서《3권》의하나인 사법권을 틀어쥐고있는 재판기관이 그 어떤 개인이나 그루빠의 영향도 배제하고 재판의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력설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계급사회에서 재판소는 국가주권을 쥔 지배계급이 저들의 정치적지배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권력기구의 하나이다. 때문에 재판소의 모든 활동은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만을 반영하게 되며 그 실현에지향되게 된다.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떠난 초계급적인 재판소란 존재할수도없으며 또 그러한 재판활동이란 있어본적도 있을수도 없는것이다.

《3권분립》에 기초한 사법권의 《정부로부터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은 부르죠아지들이 저들의 재판소의 계급적성격을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것이 아니라 정부에 철저히 종속된 권력기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이 정부에 철 저히 종속된 권력기관으로 되여있는것은 우 선 그것이 정부에 의하여 조직되는데서 표 현된다.

오늘 대부분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재 판기관의 재판관들은 선거되는것이 아니 라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있다.

력사적으로 볼 때 재판관의 임명방식은 국가형성과 함께 나왔으며 왕이나 군주의 독재정치가 로괄화되고 절대적이였던 노 예사회나 봉건사회에 존재하였다.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시기 존재하였던 재 판관임명제는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그대로 답 습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최고재판소 재판판들을 비록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 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한갖 겉치레에 불 과한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것이 나 다름이 없다.

정부의 직접적인 권한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소의 판사는 정부의 정책실현에 철저 히 복종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재판관이 대통령이나 왕에 의하여 임명되는가 하면 프랑스,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재판관을 선거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제는 이러저러한 제 한 및 보류조건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대표적으로 선거전에 출마하여 재판판으로 선거되자면 많은 자산을 소유하여야한다. 자산의 소유정도에 따라 재판판으로 선거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되는것은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오직 돈과 재부에 따라 저울질하는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의 일단을 보여주는것이다.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판사직을 차지 하고있는자들은 례외없이 많은 돈과 재부 를 틀어쥐고있는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이 아 니면 그들에게 아부하여 그들로부터 막강 한 재정적, 물질적후원을 받고있는자들이 라는것을 증명하여주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이 정부에 철저히 종속된 권력기관으로 되여있는것은 또한 정부의 통제밑에 재판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이행하면서 국 가권력을 독점한 대독점부르죠아지들을 비 롯한 반동적인 지배계급은 저들의 요구와 리익을 권력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입버 릇처럼 외우던 《사법독립》의 원칙도 완전 히 줴버리고 정부가 재판활동에 적극 판 여할수 있게 하는 통치체계를 확립하고 권 력실현의 주도적인 기판으로서의 정부의 권 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정부가 재판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정부안에 사법행정부서를 내오고 그것을 통해 재판기관의 활동을 통제할수 있는 체계를 세워놓았다.

자본가계급의 요구와 리익실현의 합법 적전제와 조건, 담보를 마련해주는 재판기 관의 활동은 정부의 활동을 보다 손쉽게 해 주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판기관은 정부의 정 책실현에 전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기관으로서 판사는 대독점부 르죠아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 르죠아재판에서의 판사의 자유로운 심증 이라는것은 그 어떠한 초계급적인것이 아 니라 철저히 부르죠아계급의 리익의 견지 에서 얻게 되는 심증이다.

모든 사실은 《자유심증주의》에서의 초 계급적인 《정의》, 《량심》 등은 있을수도 없 는 허황한것들로서 이것은 순수 부르죠아 재판의 계급성을 부인해보려는 기만적인 것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부르죠아지들이 《자유심증주의》를 통하여 제아무리 저들의 재판의 계급적본질을 은페하려고 시도하여도 결코 그것은 변할 수도 없어질수도 없다.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기만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불공정한 부 르죠아재판의 현실을 합리화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자유심증주의》를 리론적기초로 하고있는 부르죠아재판에서는 판사의 내부적확신이 당사자들의 주장사실에 철저한 구속을 받는다. 다시말하여 사건해결에 필요한모든 증거들에 대한 판사의 평가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요구의 범위안에서만 내려지게 되여있다.

판사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요구의 범위 안에서만 확신을 가지게 되여있는것은 특 히 민사재판에서 찾아볼수 있다.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는 우선 판사가 당 사자가 자백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진실여 부를 조사검토하지 못하게 되여있다.

부르죠아지들은 당사자의 자백에 의한 판사의 구속을 마치도 당사자에게 그 어떤 《자유》나 보장하는것인듯이 묘사하고있다.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자백은 사실 본 원적이며 직접증거로서 사건해결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판소는 증거의 한 종류인 당사자의 자백을 매우 중요시해야 하며 여기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즉 당사자의 자백이라 도 그것을 철저히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자백은 간혹 그 어떤 부정적 요인에 의하여 객관적사실과 전혀 맞지 않 게 외곡과장될수 있다.

만일 판사가 당사자의 자백에 대하여 아무리한 조사검토없이 무턱대고 진실한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사건해결에서 흑백이 완전히 전도될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늘 미국, 영국, 오스트랄리아 등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민사재판에서는 당 사자의 변론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판사의 확신이 당사자의 자백내용에 국한되고있다.

당사자의 자백에 대한 판사의 무관심한 태도로 하여 온갖 부정협잡행위가 성행하 는 부르죠아사회에서는 협잡과 강박에 못 이겨 본의아닌 허위자백을 하는 현상이 보 편적현상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는 또한 판사가 당 사자들사이에 체결된 자백계약에 구속을 받 게 되여있다.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 자백계약이라는 것은 증거계약의 한 종류로서 어떤 구체 적인 사실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하거나 혹 은 다투지 않은것으로 하는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의미한다.

당사자들사이에 그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진실한것으로 《합의》를 보았다면 판사는 그 《합의》에 구속을 받게 된다. 즉 당사자 들의 《합의》에 대해서는 판사가 조사평가 할수 없는것이다.

부르죠아지들은 자백계약은 당사자들사이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인것만큼 이에 대하여 판사가 조사평가하는것은 그들의 민사상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하고있다.

원래 자백이라는것은 말그대로 스스로 고백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에는 상대방과 의 그 어떤 계약이라는것이 있을수도 없 는것이다.

만일 그 어떤 계약에 의한 자백이라면 그 것은 벌써 고유한 의미에서의 자백이 될 수 없는것이다. 설사 자백계약이 이루어졌 다면 그것은 쌍방당사자들의 서로의 신뢰 와 평등에 기초한것이라야 할것이다.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 판사를 구속하고 있는 자백계약은 실제적으로 볼 때 진정 한 의사에 기초한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온갖 모순과 대립이 격화된 사회로서 사람들사이에는 호상신뢰와 협력이라는것이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오직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시키는것과 같은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할뿐이다. 때문에 자백계약은 철저히 평등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며 여기서는 량켠중 어느 한켠당사자의 희생을전제로 하게 된다. 누가 그 희생물이 되는가 하는 기준은 두말할것없이 돈과 권력이다. 결국 자백계약은 돈과 권력이 막강한자의 일방적인 강요나 회유, 기만에 의하여 맺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판사가 자백계약에 대한 정당 성여부도 심사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한 의 사에 기초한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것 은 막강한 금권을 가진자에게 유리한 결과 만이 차례지게 하는 공간을 지어줄뿐이다.

자본주의민사재판에서는 또한 판사가 한

천당사자가 증거조사나 사건해결을 위한 자기의 요구에 《불복》한 경우 아무려한 조사검토없이 다른천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하고있다.

실례로 한켠당사자가 문서의 제출명령에 제때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판사는 문서에 대한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또 한켠당사자가제때에 소환에 응하지 못하였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판사는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판사의 이러저러한 요구에 제때에 응하지 못한 한켠당사자의 행위가 곧 상대방당사자의 주장의 진실성을 의미하는것으로는 결코 될수 없다.

판사는 자기의 요구에 대한 한켠당사자 의《불복》에 대해 응당한 관심을 돌려 그 리 유를 정확히 알아보지 못한 조건에서 그 어 떤 확신도 가질수 없으며 다른켠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검 토하여야 한다.

만일 한켠당사자가 《불복》한다고 하여 다른켠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진실한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 재판은 결코 공정한 재 판이라고 말할수 없다.

오늘 부르죠아민사재판에서 문서의 작 성과 재판정에서의 진술은 높은 법률지식 과 능한 변론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감당 하자면 전문법률지식이 안받침되여야 한 다. 이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부득불 변 호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며 여 기서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다.

결국 변호사채용에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는 부유한자는 판사의 요구를 충족 시켜주지만 그렇지 못한자는 판사의 요구 에 《불복》하였다는 리유로 재판에서 패하 게 되는것이다.

오늘 대다수 자본주의나라들의 민사재 판에서는 당사자들의 소송상권리실현의 자 유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부르죠아지들 의 주장과 요구가 절대화되며 판사가 여 기에 맹종맹동함으로써 재판의 객관성과 공 정성이 완전히 무시되고있다.

이와 같이 《자유심증주의》는 그 발생자체가 봉건적인 재판제도를 타파하고 부르죠아지들이 저들의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재판제도를 확립하려는 요구를 반영하여나왔으며 그것이 확립된 후에는 그의 계급적본질을 은폐하고 그 적용의 불공정한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리론이다.

우리는 부르죠아지들이 들고나오는 《자유심증주의》의 기만성을 똑바로 알고 그와의 투쟁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식사회주의재판제도의 우월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할것이다.